

영등포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10.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8호로 2014년 10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안 제5조)

나.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안 제6조제2항)

-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 반환

다.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면제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수수료 면제 관련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6조에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수수료 면제대상을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